

(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5/2567호

동부 특별 개발 구역의 투자촉진 방안에 대한 추가 개정

(동부경제회랑: Eastern Economic Corridor: EEC)

2022년 12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17/2565호 『동부특별개발구역의 투자촉진 방안』에 이어 사업자들이 동부특별개발구역(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EEC)의 투자촉진 방안에 근거하여 투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촉진법 제16조, 제18조, 제31조, 제31/1조 및 제35조에 의거하여 투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는 바이다.

1. 2022년 12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17/2565호『동부특별개발구역(동부경제회랑 (Eastern Economic Corridor: EEC))의 투자촉진 방안』의 5항의 조항은 폐지되고 다음 조항으로 대체된다.

“5. 동부특별개발구역 정책 위원회가 특정 산업에 관한 촉진 구역에 대해 인센티브(권리와 혜택) 부여에 대해 발표한 경우, 사업자는 여전히 투자촉진법에 따라 투자 촉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중복 인센티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2. 2022년 12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17/2565호『동부특별개발구역(동부경제회랑 (Eastern Economic Corridor: EEC))의 투자촉진 방안』의 6항의 조항은 폐지되고 다음 조항으로 대체된다.

“6. 관련된 내용 고시와 실무 지침을 공지할 권한을 투자청에 위임한다.”

이 고시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일 2024년 2월 7일

쁘쁘리 파히타누껀(Parnpree Bahiddha-Nukara)

(Mr.Parnpree Bahiddha-Nukara)

부총리

투자위원회 의장